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 국내외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책임작성 | 김희선 연구위원(02-707-9824, kimhs@kosbi.re.kr)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osb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 목 차

1. 서론
2. 국내 가업승계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3. 해외 주요국 가업승계지원제도 특징 및 시사점
4. 중소기업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 요약

- 국내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다음 세대로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 전환기에 직면
-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은 높은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하거나 중요 기업자산을 외부에 매각해야 함으로써 기업 영속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 정부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려는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업승계지원제도 현황 그리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가업승계지원제도 동향 분석을 토대로 국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2번째 높은 수준이며,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
- 반면 해외 국가들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인식 하에서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특례제도를 도입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축소해 나가고 있고, 상속시점에 추정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국가(캐나다, 스웨덴 등)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대안을 제시

-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10년 이상(현행)에서 5년 이상, 보유지분율은 50% (상장 30%)(현행)에서 30%(상장 20%)로 완화하고, 업력에 따른 공제한도를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약 12년)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
  -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20% 이상 처분 금지)은 완화하고 업종유지요건은 삭제할 필요
  -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해서 납세담보 종류에 비상장 주식을 포함할 필요
  -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의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할 필요
-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 유예 후 상속 시 정산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선대 경영자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중소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승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장기적으로는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를 통해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대신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 검토가 필요



## 1. 서론

-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다음 세대로의 기업을 승계해야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는 상태
  - 2018년 중소기업 대표자 평균 연령은 53.5세이고 60세 이상인 기업의 비중은 22.7%로<sup>1)</sup>,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자가 되고 가업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노노상속(老老相續) 현상이 발생
-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는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현행 상속·증여세제 하에서는 중소기업이 세대를 넘어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장수기업이 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내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sup>2)</sup> 정부는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하에 상속세제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
  - 2000년 이후 동일한 과세표준구간과 세율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최고세율 구간은 '30억 초과'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적용되던 최고세율 구간 '50억 초과' 보다 낮아져 세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태<sup>3)</sup>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대신 기업자산을 매각하거나 배당금을 높이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
  - 2019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세금부담'을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sup>4)</sup>
  - 실제로 과중한 상속세 부담과 가업상속공제의 제한적인 요건 때문에 창업주들이 한국M&A거래소(KMX)나 사모펀드에 회사매각을 의뢰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sup>5)</sup>
  -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려워지면서 흑자상태에서 폐업하거나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되는 기업도 발생<sup>6)</sup>

1) 2018년 기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CEO 평균연령은 54.1세,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CEO의 평균연령은 52.8세로 확인(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2019)

2) 2018년 기준 상속세액은 2조 8,315억원이며, 전체 내국세 258조 311억원 중 상속세는 약 1.1%, 상속세 및 증여세 합계는 7조 3,589억원으로 국세 중 약 2.9%를 차지(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연보, 2019)

3) 최고세율 또한 1996년 이전 40%에서 10%p 상승한 50%를 적용

4) 중소기업중앙회(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5) 기업인터뷰 결과

-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세제지원 범위와 혜택을 점차 확대해 오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적인 평가가 다수
  - 1997년 가업상속공제 제도 도입이 후 1억원이었던 공제금액 한도를 2008년부터 확대해오고 있으나, 적용 요건이 엄격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상황
  - 2019년 말 사후관리기간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제기
    - 국내 중소기업의 생존기간 분포를 보면 10년 미만이 48%에 달해,<sup>7)</sup>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 사후관리 기간 7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 이에 가업을 승계하려는 자녀의 계속 경영기간을 5년, 사후관리 의무기간은 5년, 자산유지 의무는 50%로 낮추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됨<sup>8)</sup>
- 결국 현행 상속세제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조세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업승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개선방안이 필요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와 해외 주요국의 관련 세제 현황 검토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

6) 기업인터뷰 결과

7) 헤럴드경제(2020.7.7.).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62), 2020.6.11.

## 2. 국내 기업승계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 기업승계와 관련해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은 OECD 국가들 중 높은 수준

-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 OECD 22개국의 평균치(35.8%)보다 14.2%p 높음<sup>9)</sup>
  - 벨기에, 프랑스, 일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나, 벨기에와 프랑스의 경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상속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사실상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1〉 OECD 주요국 명목 상속세율

(단위 : %)

국가 순위	상속세 최고세율	배우자	자녀	부모	제3자
벨기에	80	30	30	30	80
프랑스	60	비과세	45	45	60
일본	55	55	55	55	55
<b>한국</b>	<b>50</b>	<b>50</b>	<b>50</b>	<b>50</b>	<b>50</b>
독일	50	30	30	30	50
영국	40	비과세	40	40	40
미국	40	40	40	40	40
네덜란드	40	20	20	20	40

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p.173의 표 일부 인용

### ■ 명목 상속세율도 높지만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의 비중도 높은 수준

-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4%로 벨기에(0.7%), 프랑스(0.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0.17%)의 두 배 이상
- 또한 총 세수 중 상속·증여세의 비중(1.45%)도 OECD 평균(0.45%)의 세 배 이상이며, 벨기에(1.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

9) OECD 통계자료 분석결과

〈표 2〉 OECD 주요국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

(단위 : %)

국가 순위	GDP 대비 상속·증여세			국가 순위	총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벨기에	0.690	0.713	0.721	벨기에	1.573	1.603	1.609
프랑스	0.555	0.621	0.608	<b>한국</b>	<b>1.242</b>	<b>1.458</b>	<b>1.453</b>
<b>한국</b>	<b>0.326</b>	<b>0.392</b>	<b>0.413</b>	일본	1.292	1.334	-
일본	0.397	0.419	0.407	프랑스	1.224	1.347	1.319
핀란드	0.242	0.406	0.298	영국	0.745	0.789	0.746
영국	0.244	0.263	0.250	아일랜드	0.647	0.670	0.717
네덜란드	0.260	0.249	0.224	핀란드	0.549	0.937	0.699
스페인	0.238	0.230	0.220	스페인	0.714	0.684	0.640
덴마크	0.200	0.199	0.214	스위스	0.624	0.623	0.631
독일	0.222	0.187	0.201	네덜란드	0.678	0.644	0.577

자료 : OECD 통계자료 가공

-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있는 추세
  -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경영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경제 활력을 높이려는 의도
- 현재 OECD 35개국 중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13개국이며, 그 중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는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
  - 22개국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 중 17개국은 직계비속의 기업승계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큰 폭의 세율인하 또는 세액공제를 제공

〈표 3〉 OECD 상속세 폐지 국가와 유지 국가

상속세 폐지 및 미도입 국가 : 13개국	상속세 유지 국가 : 22개국
캐나다(1972년), 호주(1979년), 이스라엘(1981년), 뉴질랜드(1992년), 포르투갈(2004년), 슬로바키아(2004년), 멕시코(2005년), 스웨덴(2005년), 오스트리아(2008년), 체코(2014년), 노르웨이(2014년), 라트비아(미도입), 에스토니아(미도입)	일본, 대한민국,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칠레,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터키, 폴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주 : ( ) 안의 숫자는 폐지연도

자료 : 전규안(2018)



- 우리나라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상속공제, 기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제도, 최대주주할증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기업승계지원제도를 운영<sup>10)</sup>
  - 기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영위, 지분율 50% 이상, 50% 이상 대표자 종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의 과세과액에서 일정한도의 기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 증여세 과세특례는 적용대상 및 요건이 기업상속공제와 동일하나 개인기업은 제외되며,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100억원까지는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
  - 연부연납제도는 기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유사한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납부 기간을 5년(일반 상속·증여분)에서 10~20년으로 연장 가능
  - 주식할증평가제도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을 경우, 평가액에 할증평가(20~30% 가산)하는 것으로 현재 일반기업(중견·대기업)에만 적용

〈표 4〉 현행 기업승계 관련 조세제도

구분		현행 내용
기업상속 공제	요건	적용대상 -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자산 5천억원 이하 중소기업
		기업 및 피상속인 - [기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경영, 기간 중 50%이상 대표자 종사 - [지분율] 특수관계 포함 50%(상장기업 30%) 이상
		상속인 - 2년 내 기업종사 및 대표이사 취임
	공제액	- [공제금액] 100% - [한도] 2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7년 - 기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 내 변경허용) - 기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매년 80% + 10년 평균고용 100%(또는 최대주주 및 친족 등 임금을 제외한 정규직근로자 총급여액)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수증자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세 신고한까지 기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자 -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 - 특수관계 포함 50%(상장기업 30%) 이상의 주식 등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공제액	-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 - 세율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7년 -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 유지

10) 상속세법 제15조, 제18조, 제71조

		-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 내 변경허용) - 지분유지
주식할증 평가	가산금액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 이하: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20% -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50% 초과: 일반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 × 30% → (현행)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등 할증 배제
상속세 연부 연납	신청요건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세담보 제공
	연부연납기간	- 상속재산비율 50% 미만: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7년(거치기간 3년 허용) - 상속재산비율 50% 이상: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로부터 15년(거치기간 5년 허용)

자료 : 국세청(2020) ; 상속세법 제15조, 제18조, 제71조 정리

■ 하지만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지적<sup>11)</sup>

- 상속인은 소유권(지분율)과 경영권(대표자 취임) 모두를 승계 받아야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 발전을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로 대표되는 책임경영과 가족경영이 병행되는 현재 추세에 비부합
- 사후관리요건 중 자산유지(20% 이상 처분 금지) 요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을 감안할 때 신산업 진출이나 사업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최대 500억원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해야 한다는 제한적인 요건은 중소기업 평균 업력이 11.3~12.6년(2016년 기준)<sup>12)</sup>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비현실적
-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100억원은 가업의 영속성 지원이라는 동일목적의 가업상속과 비교했을 때 최대 5배 까지 낮고 적용대상도 개인기업을 제외하고 있어, 제도 간 그리고 대상 간 혜택 불균형이 존재
- 연부연납제도에서 가업승계 관련 연부연납 기간이 2~4배인 점은 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납세담보에 비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기업이 비상장법인(99.7%)<sup>13)</sup>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음

11) 기업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12) 제조업은 12.6년, 서비스업은 11.3년임(중소벤처기업부, 「2017 중소기업실태조사」, 2017.12).

13) 2018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740,215개) 중 비상장법인은 738,157개이고, 중소기업은 638,281개로 86.2%를 차지하고 있음(국세청 통계).

■ 실제로 기업승계지원제도의 이용 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 최근 8년간(2011~2018년) 기업승계지원제도(기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연평균 84건 정도(총 공제금액 2,365억원)
  - 참고로 기업상속공제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독일은 연평균 1만 3,169건, 공제금액 276억유로(한화 약 37.8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기업상속공제 적용 건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100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

〈표 5〉 한국과 독일의 기업상속공제 결정 현황 비교

연도	한국		독일	
	건수	공제금액(백만원)	건수	공제금액(천 유로)
2015	67	170,593	24,006	56,780,667
2016	76	318,378	10,636	21,424,522
2017	91	222,598	9,260	20,387,105
2018	103	234,421	8,773	11,634,555
평균(2011~2018)	84	236,498	13,169	27,556,712

자료 : 국세통계연보 및 Finanzen und Steuern(Erbchaft-und Schenkungsteuer) 각 년도 자료 가공

### 3. 해외 주요국 기업승계지원제도 특징 및 시사점

#### 1) 상속·증여세 유지 국가 사례 검토

■ 독일의 경우 유산취득세 방식<sup>14)</sup>을 활용해 상속세를 부과하고, 각각 상속인과 수증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을 토대로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7단계 누진세율(7~50%)이 적용되고,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친인척인지의 여부 따라 법정세율이 달라지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계비속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과세체계를 보유

■ 독일은 1997년부터 기업상속공제를 도입한 뒤, 2008년 「상속세 개혁법률」에 따라 공제요건과 대상을 크게 완화해 적용해 왔으나, 2014년 말 연방헌법재판소 판결<sup>15)</sup>에 따라 2016년 말 이후부터는 요건이 다소 강화

-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규모기업 상속세 공제 제한, 급여총액유지 규정 개정, 기업재산과 관리자산의 개념 재정립 등으로 요약 가능
  - 상속재산 2천6백만 유로(한화 약 356억 원) 이상 기업의 경우 공제필요성 심사를 통해 상속세 감면혜택을 제공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제율을 85%와 100% 중에서 선택 가능
  - 고용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급여총액유지 의무와 관련해 의무 면제 대상을 근로자 5명 이하인 사업체로 축소하고, 20명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도 상속인이 선택한 공제율에 따라 급여총액유지 의무비율을 차등해서 적용<sup>16)</sup>
  - 사업용 자산에서 예술작품 및 수집품, 도서관, 주화, 귀금속, 빈티지 자동차, 요트 등과 같이 사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제외

14)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의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함

15) 2014년 12월 17일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기업상속공제제도는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기업상속공제제도는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부의 이전을 막고, 이용자 입장에서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

16) 85% 공제율 적용 시 사업승계일 이후 5년 동안 기존 총급여의 40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100% 공제율 적용 시에는 사업승계일 이후 7년 동안 700% 이상을 유지해야 함

〈표 6〉 독일의 2016년 개정 전후 기업상속공제제도 비교

구분		2016년 개정 전	2016년 개정 후
요건	적용 대상	모든 기업 (제외) 비사업용자산 50% 이상 기업	모든 기업 (제외) 비사업용자산 10% 이상 기업 (예외) 2,600만 유로 초과 자산을 가진 기업은 필요성 심사 및 공제율 축소
	피 상속인	[기업영위기간] 제한 없음 [지분율]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 이상	좌동
	상속인	제한 없음	좌동
공제율	[공제율] 85% 또는 100% [한 도] 없음	[공제율] 85% 또는 100% -상속재산 2,600만유로를 초과하는 75만 유로 당 공제율을 1%p씩 차감해서 적용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5년(85%공제), 7년(100%공제) 기업유지(휴·폐업 금지) 기업재산 유지(처분비율 추정) 지분 및 자본유지* 고용유지: (85%공제) 5년 급여 400%, (100%공제) 7년 급여 700%	좌동	

\* : 배당 외 출자 자본의 회수(15만 유로 이상) 금지  
 자료 : 독일 상속 및 증여세법(ErbStG) §13 정리

- 일본의 상속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기초로 유산세 방식을 더한 형태로 법정세율은 10~55%를 적용하는데, 혈족이 아닌 경우 상속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부과함으로써 혈족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혜택을 부여
- 일본은 생전 증여를 용이하게 하고 다음 세대로의 고령자 보유 자산 이전 촉진을 위해 2003년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를 도입
  - 증여 시 취득재산에 대해 저세율의 증여세를 납부토록 하고, 이후 상속 시 그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 생전 증여를 장려하기 위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
- 일본에서는 기업승계 촉진을 위해 2009년에 ‘법인용 사업승계세제’가 도입됐으며, 2018년부터는 10년간 납세유예의 대상이 되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고, 납세유예비율이 인상되는 등 추가적인 개선조치가 이루어짐

- ‘법인용 사업승계세제’란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등을 가업승계자가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경우, 경제산업성의 사전 확인과 고용 등의 부문에서 사후유지요건 등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에 대한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시켜주는 제도
- 하지만 이후 등 제도의 이용 불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제기되면서, 사전확인요건과 고용유지요건이 2013년부터 완화
- 2018년 세법개정으로 비상장 중소기업 소유주가 친족인 후계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이때 발생하는 상속세의 100%를 2027년까지 납부 유예시켜주는 특례제도를 도입

〈표 7〉 일본 가업상속공제제도 관련 특례조치 및 일반조치의 비교

구 분	특례조치(2018년 이후)	일반조치(기존)
사전계획제출	5년 이내(2018년 4월~2022년 3월) 특례승계계획 제출	불요
적용기한	10년 (2018~2027년)	없음
대상주식 수	전부	주식의 3분의2
납세유예비율	100%	상속: 80%, 증여: 100%
승계패턴	최대 3인의 후계자	1인의 후계자
고용확보요건	탄력화(예외 사유 인정) <sup>1)</sup>	승계 후 5년간 평균 80% 유지
상속세 납부 면제	있음 <sup>2)</sup>	없음
상속시 정산과세의 적용	60세 이상 피상속인이 20세 이상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 가능	

주 : 1) 회사의 대표권이 없어진 경우 등

2) ①후계자가 사망한 경우, ②(특례) 경영승계기간 동안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회사의 대표권이 없어진 경우, ③(특례)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④(특례) 경영승계기간 경과 후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양도·해산한 경우

자료 : 国税庁ホームページ, “非上場株式会社等についての贈与税・相続税の納税猶予・免除(法人版事業承継税制)のあらまし” 가공

## ■ 영국에는 상속세만 존재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증여세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방식으로 과세

-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데, 325,000파운드 이하는 0% 세율이, 325,000파운드를 초과한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
- 자본이득세는 자산의 양도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양도로 간주하여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라 과세액이 결정

- 한편 영국에는 기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제도로 ‘사업자산공제제도’(business property relief)가 존재
  - 동 제도는 요건을 만족하는 중요 사업자산의 이전에 대해 일정률을 반영하여 공제함으로써 상속세액을 감면하는 제도
  - 공제율은 자산 유형별로 50% 또는 100%가 적용되고, 상속으로 인한 자산 이전뿐만 아니라 증여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
    - 적용대상기업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후관리규정도 특별히 없음
  - 사업자산공제의 대상자산은 중요 사업자산으로 사망자가 최소 2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조직재편, 자산의 대체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2년간 보유했다면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음

## 2) 상속·증여세 폐지 국가 사례 검토

- 캐나다의 경우 1972년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이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여 재산의 무상이전 시점에서 자본이득세를 과세
  - 자본이득금액과 일반 소득금액을 통합하여 세액을 계산하며, 과세포함률(Inclusion rate)과 5단계 구간의 누진세율(15%~33%)을 적용<sup>17)</sup>
  - 상속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사망’ 당시 시가에 따라 자신의 자산을 상속인에게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자본이득을 기준으로 과세(단 배우자간 무상이전에 한해 자산을 이전받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양도 시에 과세)
- 호주는 1977년부터 1984년에 걸쳐 상속·증여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상속의 경우 사망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상속인의 해당 자산 처분 시 과세하고 있음
  - 자본이득은 일반소득과 합산된 금액으로 하나의 종합소득을 구성하게 되며, 이에 대해서 거주자의 경우 5단계의 누진세율(0~45%)이 적용

17) 자본이득의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완화하기 위해서 자본이득 전부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금액 중 포함률을 곱한 금액에 한해 과세소득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포함률은 50%이고, 적격 기부단체에 대한 주식·신탁지분 등 기부는 포함률이 0%

-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이후 상속인의 양도(처분)로 자본이득이 실현될 때까지 과세 이연되며, 증여의 경우에는 유상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시가로 처분된 것과 같이 보아 자본이득을 계산하여 과세
-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폐지하여 자본이득세로 대체했고 호주와 같이 취득가액 승계를 통한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음
- 현재 사업·근로소득은 고율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자본소득은 상대적으로 저율인 30%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취하고 있음
- 스웨덴과 호주는 캐나다와 달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산취득가액을 승계한 후, 해당 자산을 처분했을 때 누적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

### 3) 정책적 시사점

-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촉진이라는 정책목적에 비춰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기준으로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고, 상속세의 실효세율도 평균 34%로 상당히 높은 수준<sup>18)</sup>
- 이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도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함<sup>19)</sup>
- 가업상속공제율은 외국과 유사한 수준이나 (업력에 따른)공제한도 결정방식과 엄격한 적용 및 사후관리 요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을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율은 100%로 독일(85~100%), 일본(80%, 특별조치: 100%)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가업영위기간으로 공제한도를 정하는 경우를 해외에서 발견하기는 곤란
- 대부분의 해외 가업상속공제제도는 특정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으며, 공제요건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지 않음
  - 상속 후 최소 기업경영 기간의 경우 영국은 2년, 독일은 5년으로 우리나라(7년)에 비해 짧고, 지분보유 최소 의무기간도 독일과 일본은 5년으로 우리나라보다(7년) 짧음

18) 한국경제(2019.10.4.).

19) 기업인터뷰 결과



- 고용유지요건도 2019년 말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일본(5년), 독일(5~7년)에 비해서 엄격
- 결국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근 상속세제 개편 흐름에 비춰봤을 때 기업상속공제제도를 정비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을 확인 가능
  - 주요 국가들은 기업상속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 많은 국가가 상속·증여세를 축소해 나가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국내 자본의 유출을 우려해 아예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상속시점에 추정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
  -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의 폐지가 해외로 유출되던 국내자본의 국내유턴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부담으로 지속경영에 불확실성이 컸던 스웨덴 가족기업들의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된 것으로 평가<sup>20)</sup>
  - 결국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기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표 8〉 기업상속공제제도 국제 비교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영국
사 전 요 건	적용 대상 - 매출액 3천억 미만 중견기업 - 자산 3천억 이하 중소기업	- 기업규모 제한 X - 자산 2,600만유로 초과 기업은 필요성 심사 절차	- 비상장 중소기업	X
	피상속인 - 기업영위기간 1년 이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 지분을 특수관계인 포함 50%(상장 30%) 이상	- 피상속인 및 조합원 합산 25% 이상	- 승계회사 대표와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의결권 50% 초과 보유	-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
	상속인 - 2년 내 기업종사 및 대표자 취임	-	- 피상속인의 친족, 상속개시 직전 임원, 상속개시일로부터 5개월내 대표 취임 - 최대주주, 의결권주식의 50% 초과 보유	X

20) 현진권(2013) 참고

<p>공제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 사업자산 등 가액 100%</li> <li>- 한도: 200억원(10년 이상), 300억원(20년 이상), 500억원(30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공제) 비상업용자산 50% 이하, (100%공제) 비상업용자산 10% 이하</li> <li>- 자산 2,600만유로 초과시 75만유로당 1%p씩 공제율 감소, 최대공제가능 자산 9천만유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행주식 총수의 2/3 한도(특별조치: 공제상한 없음) 비상장주식의 80% 상속세 유예 (특별조치: 전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공제) 비상장주식, 사업관련지분</li> <li>- (50% 공제) 상장주식, 토지, 건물, 설비 등</li> </ul>
<p>사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후관리기간: 7년</li> <li>-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업종유지(중분류내 변경은 허용)</li> <li>- 가업자산 20% 이상 처분금지</li> <li>- 지분유지</li> <li>- 고용유지: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80%+10년 평균1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5% 공제): 5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5년간 400% 이상)</li> <li>- (100% 공제): 7년 이상 가업 및 고용유지(급여총액 7년간 700%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 후 5개월내 대표이사 취임 및 이후 5년간 대표직, 상속지분 유지</li> <li>- 근로자 수 80% 이상 5년간 유지(예외 및 탄력 적용가능)</li> </ul>	<p>X</p>

자료 : 저자가 정리

## 4. 중소기업 가업승계 촉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1)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 개선

#### ■ 가업승계 촉진을 위해 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가 필요

-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10년 이상(현행)에서 5년 이상, 지분율은 50% (상장 30%)(현행)에서 30%(상장 20%)로 낮출 필요
  - 상속인의 2년 내 가업종사 요건은 전문경영인과 가족경영이 병행되는 현재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sup>21)</sup>
- 국내 중소기업 평균 업력(약 12년)에 부합하도록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업력별로 공제한도를 차등화하는 사례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는 발견하기 곤란
  - 특히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을 고려할 경우 중소기업의 과거 업력보다는 미래 성장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 또한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소부장 기업과 같이 기술축척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영의 영속성이 보호되어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세특례를 마련해 공제한도 폐지나 가업영위기간과 관계없이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 사후관리기간 줄여서 부담을 최소화하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업유지요건 중 자산유지요건(20% 이상 처분 금지)은 완화하고 업종유지요건 역시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 ■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일본과 같이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유예 후 상속 시 정산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세대 경영자 생전에 가업승계를 충분히 계획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

21)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적절한 경영후계자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인 요건에 경영요건까지 두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 상속 전 가업승계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일정 부분 과세하지 않거나 저율 과세(10~20%)하고, 이후 상속 발생 시점에 저율과세 된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통합해 상속세를 계산하되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적용해 준다면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
- 이 때 증여부터 상속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수익 정도만 세손실이 발생할 것이므로 국가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
- 연부연납제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인 점을 고려해 납세담보 종류에 비상장주식을 포함시켜주는 것이 필요
- 상속주식의 고평가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의 초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에 관련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중견기업을 제외해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할증평가 적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 가업상속공제의 동일한 대상인 중견기업을 할증 평가하는 현재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장려하려는 가업상속공제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
- 중소기업의 중견장수기업으로의 성장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이 필요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 2) 가업승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경영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
-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한 세무·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2019년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업승계에는 통상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sup>22)</sup>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업승계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

22) 중소기업중앙회(2019) p.22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컨설팅 프로그램’ 속에 기업승계 컨설팅 모듈을 추가하고, 컨설팅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 상속재산을 담보로 해 정부로부터의 장기 저리(무이자)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함
  - 장기 저리의 정부 대출금을 활용해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중소기업 입장에서 기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
  - 특히 담보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상증세법」상의 평가기법<sup>23)</sup>을 활용할 수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업가치평가 기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 3) 자본이득세 도입 검토

-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상속세제를 자본이득세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
  -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이 없음에도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기업승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따라서 자본이득세 방식의 도입은 기업승계 촉진의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조세원칙에도 부합
- 도입 가능한 자본이득과세 방법은 ‘무상이전 시 과세’, ‘승계취득가액 과세’, ‘신취득가액 과세’의 3가지가 존재
  - ‘무상이전 시 과세’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이전 될 때 피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식(캐나다 사례)
    - 이 방식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발생된 미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청산하는 의미의 과세방식으로 과세이론상 형평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행 상속세처럼 미실현소득을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발생시켜 기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23) 이에 관해서는 변석준(2015)을 참고

-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상속재산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실제 상속재산을 처분했을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자본이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호주, 스웨덴 사례)
- ‘신취득가액 과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실제 처분하는 시점에 (처분가액 - 상속시점의 상속재산 시가)로 자본이득을 계산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
  - 상속·증여 시 자본이득의 실현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계취득가액 과세방법과 유사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과세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존재

〈표 9〉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사례 비교

구분	무상이전시 과세	승계취득가액 과세	신취득가액 과세
상속 시 자본이득 과세액	10억원 (20억원-10억원)	-	-
상속자산 양도 시 자본이득 과세액	30억원 (50억원-20억원)	40억원 (50억원-10억원)	30억원 (50억원-20억원)
총 자본이득 과세액	40억원	40억원	30억원

주: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10억원, 상속시 시가 20억원, 상속인의 양도가액 50억원  
 자료: 저자 정리 및 계산

- 이 세 가지 중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라는 조세장벽을 제거하면서도 조세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식은 ‘승계취득가액 과세’
  - 승계취득가액 과세는 기업승계 시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망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면서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존재
  - 다만, 주식, 부동산 등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자산(사업관련 자산)을 제외하고는 상속세 과세가 필요
- 승계취득가액 과세(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야 할 것
  - 피상속인의 기업영위기간을 5년 이상 경영으로 하고, 지분율도 30%(상장 20%)로 낮추고, 공제한도는 추후 자본이득세로 과세될 것이므로 폐지
  - 사후관리기간은 주요국과 같이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유지요건은 폐지

- 다만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상속세를 부과하여 조세회피행위를 방지
-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상자산의 처분 시 사망자와 상속인의 자본이득을 모두 합해서 과세해야 할 것

〈표 10〉 자본이득세 도입(안)

구분		내용
요건	적용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가업 및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이상 경영, 기간 중 50% 이상 대표자 종사 [지분율] 30%(상장20%)이상(특수관계인 포함)
지원방법		[과세이연] - 상속시 주식, 사업용자산 비과세 - 대상자산 처분시 자본이득 과세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 5년 - 가업유지: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 자산 5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유지 - 고용유지: 총급여기준 매년 100%

자료 : 저자 정리

#### 4)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제도개선 추진

-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가업승계촉진 측면에서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상속·증여세제의 개선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문제점 존재**
- **이에 단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행 가업승계지원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도 이루어져야 할 것**
-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와 같이 상속세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려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

## 참고자료

- 국세청(2020),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 변석준(2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KLCA Monthly Journal 486.
- 중소기업중앙회(2019),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 정기간행물.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실태조사 2018」
- 전규한(2017), 「가업승계세제의 개선방안」, 발표자료, 한국재정학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7), 「OECD 회원국의 조세통계로 본 국제동향」
- 현진권(2013), 「복지천국의 나라, 스웨덴의 불공평한 세금제도: 2005년 상속·증여세 폐지」, KERI Brief 13-11, 한국경제연구원
-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 Statistisches Bundesamt(Destatis), Finanzen und Steuern Erbschaft-und Schenkungsteuer 2018.
- [칼럼] “이번엔 바뀔까…지난해 시늉만 낸 가업승계 완화, 논의 붓물”, 해럴드 경제, 2020.7.7.
- [칼럼] “상속세 실효세율이 20%...中企 공제 다 받아도 34%”, 한국경제, 2019.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독일 연방법 홈페이지. <https://www.buzer.de/gesetz>
- 본 중소기업연구소 홈페이지. [www.ifm-bonn.org/](http://www.ifm-bonn.org/)
-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https://sweden.se>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 [www.nta.go.jp](http://www.nta.go.jp)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http://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ato.gov.au/>

##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

발행인 : 이병헌

편집인 : 이동주

발행처 : 중소기업연구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신대방동 686-70) (07074)

전화: 02-707-9800, 팩스: 02-707-9894

홈페이지: <http://www.kosbi.re.kr>

인쇄처 :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

---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연구진)의 견해이며,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